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의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문 순 덕 책임연구원




JDI

정책이슈브리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6년 11월 15일 Vol. 26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강기춘

주 소 :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 대안들이 도출되어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제주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의 시사점



Contents

- I.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요
- II.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 III. 제주지역의 문화영향평가제도 추진 현황
- IV. 제주에 주는 시사점

I. 문화영향 평가제도 개요

1.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근대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과 개발에 치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물질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감수성 회복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으로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으며,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하여 경제, 환경에 대한 효과 분석은 있으나 문화적 가치에 대한 효과 분석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03년 참여정부에서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제기되었음.
 -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제도 수립 시 “국민의 문화적 삶과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즉 문화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 검증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하며, 문화적 타당성 검증과정에 국민 참여(김규원, 2003 : 1)가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했음.
-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기본법」(2013)을 제정하고, 각종 정책에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법제화함.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적 관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음.
- 정부에서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범평가 단계를 거치면서 평가 방법 전반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년간(2014~2015)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년 차인 2016년에는 본격적인 평가 대상 사업으로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음(2016년 12월 평가 결과 완료 예정).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제주지역의 각종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도민들에게 문화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 제시가 가능하도록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을 검토해 보고, 제주 도민의 문화기본권과 문화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개념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제도는 「문화기본법」 5조 4항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계획·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확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하는 것을 의미함.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평가 자체보다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음.

- 문화영향평가는 해당 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가 아니라, 그것들이 실행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게 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의의가 있음.

3.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 정부에서는 「문화기본법」(2013. 12. 30. 제정)과 「문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68호 신규 제정 2014. 03. 24.)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 및 참여 기회 확대에 필요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함.

- 특히 「문화기본법 시행령」 2조에 명시된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근거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됨.

「문화기본법」

- 1조 목적 :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조 정의 :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의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5조의 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조의 5항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영향평가는 2014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9건을 시범평가 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범평가 과정에서 평가 절차, 평가 방법, 평가지표 등을 점검하여 운영 지침을 보완함.

II. 문화영향 평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시범 운영 현황

1) 1차(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사업 내용

- 2014년에 시행된 1차 시범평가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기본권을 측정하는 지표, 지역의 고유자원 보호 및 활용과 공동체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적용하였음(〈표 1〉 참조).

〈표 1〉 2014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지표
문화 기본권	소극적 권리	문화 인프라 충분성, 문화인력 배치 계획 문화 프로그램 계획, 문화재정 확보 검토
	적극적 권리	문화 수요와 표현 충족, 문화 장벽과 차별 해소
문화 정체성	지역 고유성	지역 고유자원 보호, 지역 고유자원 활용
	공동체 소통·발전	지역 주민 참여와 소통, 지역 공동체 상생 및 발전

- 2014년 4건의 1차 시범평가 대상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선정되었으며, 최종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는 〈표 2〉와 같음.
-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는 학교 내 유휴시설 및 공간 등을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므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산업단지·폐산업 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산업단지 유휴시설, 지역의 폐산업 시설을 예술인 창작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정책은 예술인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장벽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함.
- ‘도시재생 정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대해 새로운 기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므로, 문화인력 배치 및 주민 밀착형 문화시설 활용 방안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제안됨.
- ‘행복주택 정책’은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정책은 문화 수요와 표현 충족, 지역 주민 참여와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요구됨.



〈표 2〉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결과

정책명(소관기관)	내 용	평가 및 제언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내 유희시설 및 공간 등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유희공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 환경에 긍정적 영향력 기대 정책 대상 공간이 교문·외벽 등으로 확장될 경우 지역사회와의 연계 모색 가능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산업부 등 협업)	산업단지 유희시설, 지역의 폐산업시설을 예술인 창작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민 중심의 협의회 구성 및 문화 인프라 구축 등으로 문화영향력 확산 기대 산업 유산의 문화적 재생뿐 아니라, 기존 유사 시설과의 연계 고려
도시재생 정책 (국토교통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대해 새로운 기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및 공동체 보존, 지역 특화산업 활용, 주민 참여 계획 등이 긍정적 효과 기대 문화 인력 배치 및 주민밀착형 문화시설 활용 고려 필요
행복주택 정책 (국토교통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조성 시 만들어진 문화공간의 개방으로 주민 문화수요 충족 기대 지역 문화 전문가 중심의 지역성 관련 사전조사로써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자료 : 정정숙(2015),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과제」,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제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발표자료집, 47쪽.

- 1차 연도에 시행한 4개의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은 대체로 시설중심의 정책에 해당되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줌.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2개)은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및 향유 기회로 확대한다는 취지임. 또한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적합함.
- 국토교통부의 정책(2개)은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

2) 2차(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사업 내용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사업은 개별평가기관에서 직접 평가할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차 시범평가 대상으로 5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정책명과 정책 내용은 〈표 3〉과 같음.
 - 2차 시범 사업 대상 정책에는 〈새뜰마을 사업(농식품부·지역발전위원회),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중소기업청),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서울시),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서울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강원도청)〉 등이 있으며, 소관기관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됨.

〈표 3〉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사업

평가대상 정책명	소관기관	정책 내용
새들마을 사업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	농식품부 / 지역발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논의, 2015년부터 시작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시장 6개소 선정,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하여 외국인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 서울 남대문, 부산 국제, 대구 서문, 전주 남부, 청주 옥거리, 제주 동문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운상가 보존 결정에 따라 세운상가에 적합한 문화 콘텐츠 자원을 연계하여, 도시재생 및 도시공간 활성화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행정 구현, 마을공동체를 통해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관계망 복원, 공동체 회복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강원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약자와 저발전 지역 문제를 해결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6~7쪽.

- 2014년 1차 시범평가 결과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2015년 2차 평가지표 개발에 반영됨(〈표 4〉 참조). 1차 평가지표에 비해 2차 평가지표에는 문화다양성, 문화경관, 유형·무형 문화유산 등을 반영함으로써 1차 평가지표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함.

〈표 4〉 2015년 문화영향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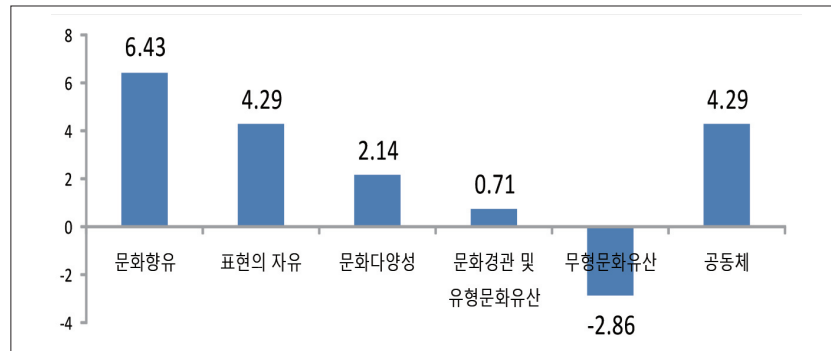
구 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접근성 문화향유수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 및 참여 기회 생활문화예술 참여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종 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문화정체성	4.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의 보호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과의 조화
	5.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의식 문화공동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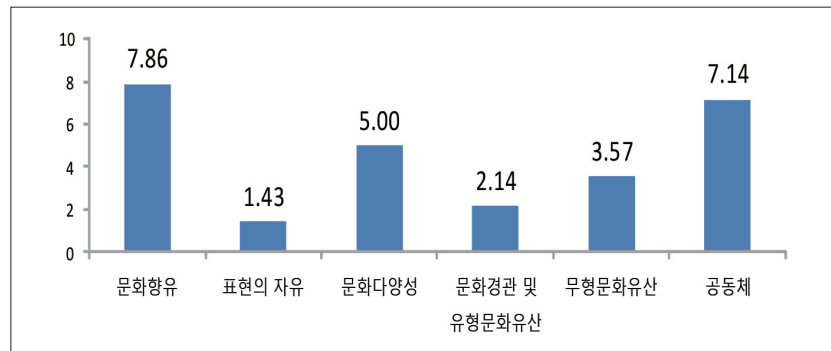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지표(〈표 4〉 참조)인 ‘문화향유,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문화경관 및 유형 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모두 (+) 점수가 나타남.¹⁾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수는 [그림 1]~[그림 5]에 잘 드러남.

1) 2015년 평가 결과는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6 : 277~295)를 참조하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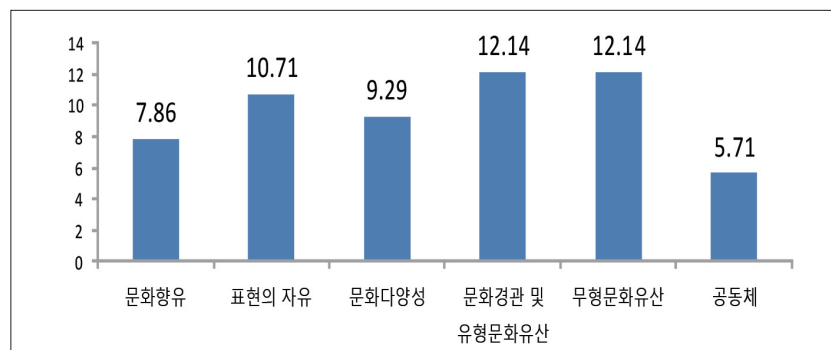
- 개별 정책별로 세부 평가지표를 적용한 결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반면 '문화 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서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다만 '새뜰마을 사업'은 '무형문화유산' 항목이 (-) 점수로 낮게 나타남.
- 각 평가지표의 점수 범위 : -20점 ~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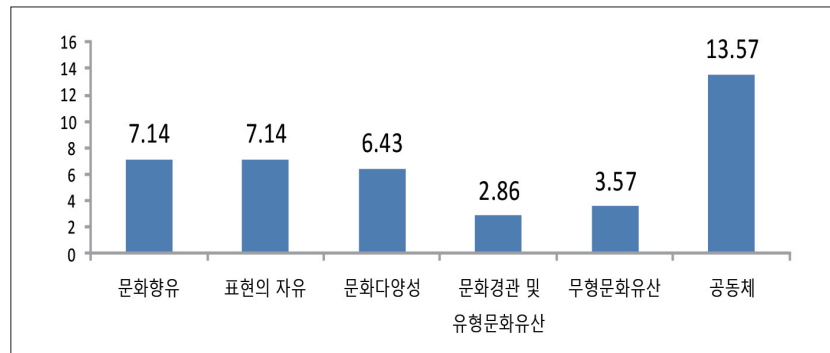
[그림 1] 새뜰마을 사업 종합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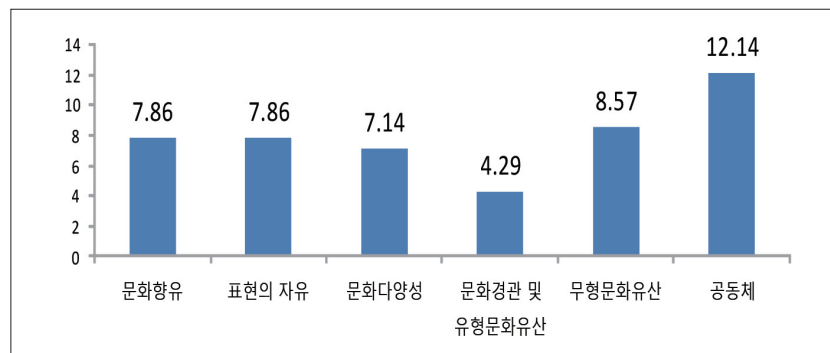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종합평가 결과



[그림 3]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종합평가 결과



[그림 4]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그림 5]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 2차 시범평가 대상 정책 중에 ‘새뜰마을사업, 세운사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주로 시설에 역점을 두었으며,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었음. 각각의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지수는 높게 나타남.
- 한편 해당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높은 반면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은 사업별로 기대치가 낮게 나타남.
 - ‘세운사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문화영향평가 결과 6개의 지표에서 4개의 평가대상 사업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 등에 따라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 5개 사업 대상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향후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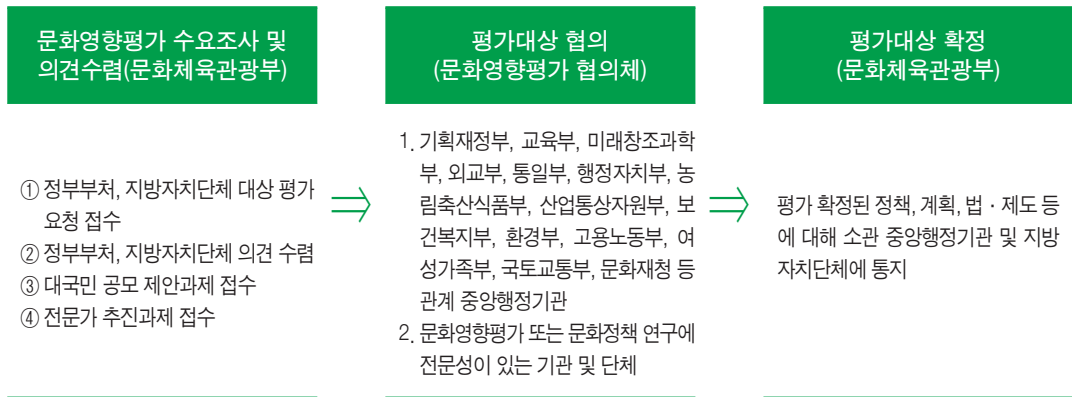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본격 시행 현황²⁾

1)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 절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

- 선정된 정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평가 대상으로 확정된 계획 등을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이후 선정된 계획 등의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 시행.

〈표 5〉 문화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 절차(201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328쪽.

2) 2016년 본격평가 대상 사업 선정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범평가(2014~2015) 결과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추진함.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계획이나 정책을 평가 대상 과제로 직접 신청하였으며, 최종 15개가 선정됨(〈표 6〉 참조).

- 중앙부처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였으며, 특별히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관련 5개의 사업이 모두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
-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안동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광주광역시 동구 및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경기도 및 시흥시, 인천광역시 동구 등이 참여함.

■ 문화영향평가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속)가 중심이 되어 기 선정된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절차를 이행하게 함.

2) 문화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문화체육관광부)에 수록된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영 지침’을 참조하여 정리함.

■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국도교통부 지원)과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자체 계획)이 선정되어 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표 6〉 2016년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연번	정책명	주요내용	소관기관
1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옹부 재창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사로 특화거리 및 한옥숙박촌 조성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경북 인동시
2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덕정 광장 복원, 성급길 도심 올레길 조성 등 	제주도 제주시
3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제(지속가능 디자인 마을)의 다원적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1인 1개 지속가능 콘텐츠 개발 	광주 동구
4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양동시장) 활성화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방직문화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등 	광주 서구
5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명공연예술센터 건립, 대명공연문화거리 조성, 대명공연문화거리 주민활동지원 사업 	대구 남구
6	지역의 문화·교육 사회공헌 및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및 운영 	교육부
7	농촌체험휴양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 식품부
8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조합원 및 참여농가 등)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장비, 시설 지원 	
9	문화재 돌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사전예방을 통한 문화재 보조사업 	문화재청
10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11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주차장, 공원,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 	경기도
12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신청사 건립 및 경기도형 스마트한 행정시스템 구축, 수원화성, 역사박물관 등과 연계한 문화적 광역 그린웨이 조성 	
13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책방거리 및 배다리 공예상가 활성화 송인지하차도 상부 생태문화공원 조성 	인천 동구
14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인 인재들이 유입되는 창의적인 청년협업마을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시흥시
15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정책 목표를 양(목표관광객 수)에서 질(관광고객만족도 향상 등)로 대폭 전환 	제주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6. 05. 19.)



3)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의 특징

- 문화영향평가 지표는 규제적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문화기본법」과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평가 사항이 법제화되어 있음.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이나 정책 등이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함(〈표 7〉 참조).
 -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는 크게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되며, 세부지표에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가 들어 있음.
 - 공통지표와 필수지표는 모든 평가 정책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며, 특성화지표와 선택 세부지표는 평가 대상 정책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함.
- 문화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를 비교해 보면(〈표 1〉, 〈표 4〉, 〈표 7〉), 시범기간(2014~2015)에는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2영역, 6개의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2016년 본 시행에는 2영역에 '문화발전'을 추가하여 3개를 공통지표로 묶고, 1개의 특성화지표를 추가함.
 - 시범평가 기간에는 세부지표를 모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시행 기간에는 세부지표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정책이나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고려함.
- 2016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3개의 공통지표 설정 이외에 개별 평가기관이나 대상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지표를 배정한 것이 특징임.

〈표 7〉 2016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구 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공통지표 (핵심지표)	문화 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접근성 (선택) 문화향유수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필수) 표현 및 참여 기회 (선택)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 정체성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선택)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필수) 사회적 자본 (선택) 문화공동체
	문화 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적 종 다양성 (선택)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필수) 창조자본 (선택) 창조기반
특성화지표 (자율지표)	개별평가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		

※ 공통지표(핵심지표) 중 필수지표는 평가에 있어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공통지표(핵심지표) 중 선택지표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성화지표(자율지표)는 평가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333쪽.

III. 제주 지역의 문화영향평가제도 추진 현황

1.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한 여건

1)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과정에 반영 필요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제주지역의 계획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문화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제주 도민들이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임.
- 이에 제주지역의 각종 정책에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사업에 반영·추진이 가능함.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계획의 핵심과제로 '문화영향평가제도 실시'가 선정되어 있어서, 향후 제주지역의 각종 정책이나 계획에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따라서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관련 계획이 문화영향평가와 연동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 계획의 추진 방향과 목표³⁾는 다음과 같음.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향은 크게 문화예술이 있는 섬과 문화예술적인 섬으로 접근이 가능함.
 - 전자는 제주 도민들의 고유한 삶의 양식을 통해 문화자원이 문화예술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후자는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섬을 조성하는 것임.
- 제주를 '문화예술이 있는 섬'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화예술이 있는 섬에서 살아가는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삶의 기쁨, 자유, 행복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일임.
- 제주섬이 예술성을 지닐 수 있게 하려면 제주의 자연을 살리고, 경관을 관리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특성이 드러나게 조성하는 것임.
-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인 '예술, 경관, 삶'을 달성하는 과정에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이 필요함.
 - 예술 :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활성화된 섬
 - 경관 : 미학적인 경관으로 문화예술화된 섬
 - 삶 : 창조적 역량으로 발전하는 섬
- 이에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다양한 정책에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2) 제주 도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만족도 환경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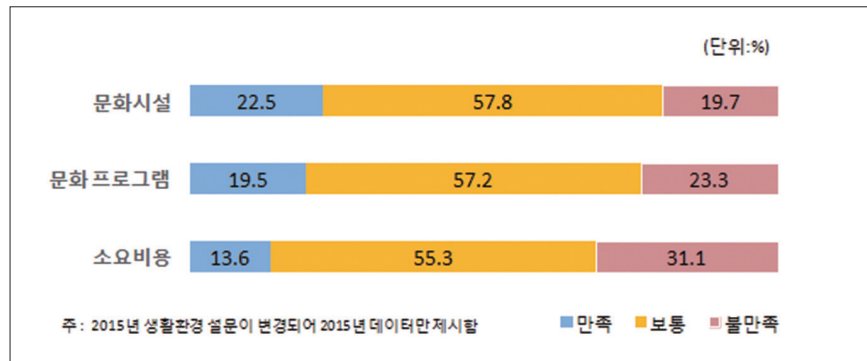
- 제주 도민들의 문화환경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그림 6 참조), 만족도 측정 요소로는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소요비용 등이 있음(제주특별자치도, 2015).
 - 문화시설 측면에서는 57.8%가 보통, 22.5%가 만족, 19.7%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대체

3) 이 부분은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문순덕 외, 2016)을 참조함.

적으로 80.3%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음.

- 문화프로그램 측면에서는 57.2%가 보통, 19.5%가 만족, 23.3%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76.7%가 만족한다는 뜻임.
- 소요비용 측면에서는 55.3%가 보통, 13.6%가 만족, 31.1%가 불만족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68.9%가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음.

- 문화환경 요소 중에 '문화시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문화프로그램, 소요비용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은 향유자(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 재현되어야 하고, 더욱이 대다수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이 안 되도록 문화예술 향유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임.



[그림 6] 문화환경요소 만족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5),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324쪽.

- 제주 도민들이 기대하는 문화환경 요소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지역의 계획 및 정책에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하다고 봄.
- 현재 제주지역은 문화예술섬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도민들의 문화 향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문화 프로그램 제공,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등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2. 제주지역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 내용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공공 정책과 사업이 문화의 시각에서 도민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문화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의 질 또는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력이 큰 정책이나 계획,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큰 계획이나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삼음.

- 제주지역의 정책 중에 2016년 본격 평가 대상 사업에는 2건이 선정됨. 하나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기본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임.⁴⁾
- 2건의 정책 사업은 공모·선정 절차를 거쳐서 개별·종합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2016년 12월 평가 종료 예정).

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문화영향평가 내용

- 이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에서 신청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선정함. 이후 문화영향평가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사업별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이 계획은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그림 7 참조) 추진 시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제안될 것임.



[그림 7] 제주시 원도심 문화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자료 : 도시문화집단CS(2016. 1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최종보고회 자료, 6쪽.

- 이 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의 공통지표는 필수 지표로 적용하고, 별도로 2개의 특성화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표 8 참조).

4)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시재생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문화영향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 특성화지표는 평가기관에서 이 계획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
- 공통지표 중에 필수 세부지표는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 세부지표는 선택지표도 모두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가치를 다양하게 측정함.
- 특성화지표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후에도 문화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 문화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주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둠.

〈표 8〉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구 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공통지표 (핵심지표)	문화 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접근성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필수) 표현 및 참여 기회 (선택)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 정체성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선택)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필수) 사회적 자본 (선택) 문화공동체
	문화 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적 종 다양성 (선택)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필수) 창조자본
선택지표 (특성화지표)	1.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환경의 유지	
	2.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자원화	

자료 : 도시문화집단지(2016. 1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최종보고회 자료, 8쪽.

- 향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관련 계획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을 평가한 후 소관기관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면, 소관기관에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함.
- 또한 이 평가는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 적용되는 사전 평가에 해당되므로, 문화영향평가 결과(개별 평가, 종합평가 등)를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문화영향평가 결과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2) 「제주 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 문화영향평가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에서는 「제주 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2016. 04.)을 수립한 후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됨.
 - 이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문화영향평가 사업에 신청함.
- 이 기본계획은 제주 관광의 양적 성장(관광객 급증, 관광 개발의 가속화 등)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

하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립됨.

- 이 계획에서는 14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86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단기(1~2년), 중기(3년 이상) 과제로 구분하였으며, 이 과제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음(〈표 9〉 참조).
- 이 기본계획은 선택지표(특성화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16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표 7〉 참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함.
 - 기본계획은 사업 추진 방향성 정도만 제시되어 있어서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제주 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의 문화적 요인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특성화지표를 별도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통지표(필수, 선택 모두)를 전부 적용하여 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표 9〉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 목록

중점과제명	세부과제명	
	단기과제	중기과제
1. 마케팅 전략 변화	① 시장분석 및 세부전략 수립 ② 주요 시장의 다변화 및 세분화 ③ 유관기관 마케팅 연계 강화 ④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확충 ⑤ SIT(목적관광) 고부가 관광객 유치에 위한 상품 개발	① 제주 관광브랜드 개발 ② 관광마케팅 전문 인력 육성 ③ 관광마케팅 영역 확대 ④ 바다올레길 조성 및 사업화 ⑤ (가칭)제주위크 추진 ⑥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고도화
2. 관광정보 안내 개선	① 관광안내사 근무자세 등 기본사항 표준화 추진 ② 관광안내소 설치 입지 재검토 ③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설치	① 관광안내소 종합 발전계획 수립 ② 랜드마크형 종합관광안내소 조성 ③ 숙박시설 내 관광안내 시스템 마련
3. 쇼핑/관광상품 개발	① 사후면세점 확대 ② 관광기념품 및 상품 개발 ③ 관광기념품 및 상품 판로 확대 ④ 야간관광문화 유도	① 관광기념품 정보 DB 구축 ② 쇼핑 특화거리 조성 ③ 야간관광 상품 발굴·지원 및 인프라 구축
4. 교통체계 개선	① 외국어 버스정보 안내 강화 ② 버스안내 앱(app) 개선 ③ 관광지 안내표지판 개선 ④ 투어버스 통합 운영 및 신설 ⑤ 렌터카 제도개선 및 제주형 내비게이션 개발	① 시티투어버스 운영 확대 및 다양한 운영 방안 검토 ② 외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 ③ 주요 허브 공항을 활용한 항공접근성 확대 ④ 직항전세기 및 저가항공사를 활용한 접근성 개선
5. 환대서비스 제고	① 영세업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 컨설팅단 운영 ② 친절업소 지정 확대, 지원 ③ 장애 없는 관광지 조성 ④ 특색있는 제주어 인사 등 안내 ⑤ 언어통역서비스 활용 홍보	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언어 통역서비스 사용 활성화
6. 관광 품질 고급화	① 가이드·수수료에 대한 제도적 대응 추진 ② 공영관광지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추진 ③ 도내숙박시설현황 통계 구축 ④ 저가덤핑상품 고급화 전략 마련	① 관광품질 통합인증 평가체계 ② 빅데이터 활용한 상권 분석, 공유 ③ 숙박시설 통합 통계시스템 구축 ④ 관광호텔·렌터카·골프장 가동률, 객단가 통계시스템 도입



중점과제명	세부과제명	
	단기과제	중기과제
7. 관광개발사업	① 지역경제 활성화 시스템 구축 ②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모델 마련	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 확립 (특별법, 조례 등)
8. 지역 연계 용·복합화 관광	① 융복합관광 협업체계 구축 ② 우수 마을공동사업 기금 지원 ③ 융복합관광사업의 공동 홍보	① 공공/민간 거버넌스 관광조직화 ② 제주 마을관광자원 통합 DB구축 및 조사활동
9. 환경친화 행태	① 관광객 환경교육 기회 확대	① 예코인증 시스템 도입 ② 관광사업체의 환경친화경영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10. 불만족 요소 관리	① 체계적 대응 위한 협업체계 구축 ② 지속·반복 불만요인 특별관리 ③ 외국인 관광불편신고제도 개선	① 불만보상 공제제도 도입 검토 ② 관광불편신고센터 통합 운영 ③ 관광경찰 독자적 역할 확립
11. 관광인력 양성	① 교육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② 관광사업체 자체교육 지원 검토 ③ 가이드 교육 등 관리 강화	① 산학연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② 우수인력 해외 교환프로그램 ③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연계한 신규 일자리 확대 추진
12. 위기 관리	① 각종 위기요소에 관한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점검 ② 위기상황에 대한 관광업계 지원	① 관광위기 대비 프로그램 운영
13. 기금 운용 효율화	① 질적 성장 중심 기금 투자·운용 ② 행정시 위임 기금 집행 제도개선 ③ 도민체감형 기금사업 발굴 지원	① 기금정책 방향 전환 ② 기금 재원 확대 추진 ③ 기금의 일정 비율을 관광 연구조사(R&D) 재원으로 별도 할당
14. 관광 조사·분석 체계화	① 국민소득 추계방식의 관광수입 추계 ② 관광객 실태조사 개선 ③ 사업체 운영실태 조사 개선 ④ 관광통계 협업체계 구축 ⑤ 조사·연구 인력 확보	① 관광서비스업 생산 동향 조사 ② 관광수입 통계주기 축소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2016),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세부계획에 반영할 때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음.
- 문화영향평가 결과 문화적인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 특정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평가할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문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함. 즉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므로, 향후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함.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에 대한 문화영향 지수보다는 주민들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의견수렴을 거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이 기본계획을 통해 인력, 공간조성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과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민들의 입장, 관광객의 입장에서 공간, 프로그램 등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국은 문화적 관점에서 질적 성장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IV. 제주에 주는 시사점

1.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

- 제주지역에서는 2016년 2개의 정책이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시범 적용의 성격을 띠므로 향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 계획 및 정책 수립 단계부터 문화영향평가가 진행되면 긍정적인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계획이나 정책이 자칫하면 평가 목적대로 진행할 수 있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문화영향평가 방법, 지표 등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해당 계획이나 정책은 도민,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제주지역의 모든 정책에 반영·집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전담인력이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제도가 준비되어야 함.
 - 정책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제주지역의 정책을 1차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평가 방법 및 결과의 활용을 구체화하고 해당 정책에 반영하여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문화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조례’를 제정하거나 유사한 조례에 반영하여, 제주지역의 정책 분야별 계획(기본계획,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할 때는 문화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본계획(3~5년)일 경우 문화영향평가 결과 반영 및 추진 여부 등 중간 점검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제주지역의 법정계획(법령, 조례에 명시된 계획)은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며,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일정규모 이상 건물 신축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할 것을 검토함.
 -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공공성을 띤 사업은 문화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 조례 등에 명시함.
-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제주지역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의 단계가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특히 사후평가는 평가 결과의 환류 방법에 해당되므로, 연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자체평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문화영향평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계획이나 정책 수립 사전 - 과정 - 사후' 등 단계별로 문화영향평가가 진행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문화영향평가가 완료된 계획이나 정책인 경우 그 결과를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제도상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때 특별한 강제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를 보완하여 정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3.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관련 운영 지침 마련 및 시행

-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동적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수용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주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함.
-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은 계획 단계부터 '문화영향평가 운영 지침'을 참고하고, 해당 정책 관련 부서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이후 평가대상 정책으로 선정되었을 때 제도의 목적에 적합한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 이에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게 문화영향평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지역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국민의 질 향상이라는 문화영향평가의 목적을 유념하여 제주지역의 계획이나 정책에 반영되고 실천되도록 사전 컨설팅과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한 운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함.
- 제주지역에서 자체적인 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해당 평가 과정에 전문가 이외에

지역 주민 등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함.

- 문화영향평가 결과 보고서가 완료되면 해당 정책 추진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수용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해당 계획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당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4.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인식 확산 및 홍보 필요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본격 시행에 발맞추어 향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문화 관련 정책과 계획뿐만 아니라 경제, 관광, 환경, 교통 등 제주지역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문화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 연구기관 및 연구자, 계획 수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홍보가 필요함.
 - 정책 수혜 대상자인 도민 대상으로 이 제도의 목적, 효과 등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정책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 관련 설명회 개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함.



참고문헌

- 김성하·황선아(2016), 「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이슈&진단』 244호, 경기연구원.
- 김효정(2013),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도시집단CS(2016. 1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최종보고회 자료집.
- 문순덕 외(2016),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제주발전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영향평가 실행에 관한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 정정숙(2015),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과제」,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제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발표자료집, 서울연구원·문화사회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2015),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보도자료(2016. 05. 19).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제주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내용 문의 : 제주발전연구원 문 순 덕 책임연구원 (T. 064-726-7407 / sena725@jdi.re.kr)

JDI 정책이슈브리프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www.jdi.re.kr

